

1

사건의 개요

※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

OLED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애인 유출

- A회사 前연구원 A○○ 등 4명과 중국 B회사 영업부장 B○○(중국인) 등 2명은 공모하여, 중국 B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, 2017. 8. 24. ~ 2018. 2. 23.경 A회사의 OLED 국가핵심 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,130건 유출 [산업기술보호법위반, 업무상배임]
- C회사 대표인 브로커 C○○은 A○○ 등이 A회사의 국가핵심기술 등을 가지고 중국 B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알선 [산업기술보호법위반]
- A○○, B○○, C○○은 공모하여, A회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중국 B회사의 제품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내주는 등 배임 [업무상배임]
- A○○은 C○○로부터 중국 B회사의 제품을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, 현금 600만원 및 향응 수수 [배임수중재]

※ 참고 : 이 사건 유출기술은 삼성SDC의 협력사가 보유한 OLED 관련 기술로서, 삼성SDC 측의 관련 기술이 유출된 것은 아님

풍력 블레이드 산업기술 애인 유출

- D대학 조교수(前 국책연구기관 센터장) E○○은,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, 2017. 2.경 위 국책연구기관의 산업기술인 '풍력시스템 개발·실증 기술' 관련 파일 및 문서 일체를 유출하고, 2017. 10. ~ 2018. 5.경 위 유출한 산업기술을 중국 F회사에 제공

[산업기술보호법위반, 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, 업무상배임]